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

- ◉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 ⇒ 사업주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사업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재해의 경중과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 이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가 3천여 명에 달하고 있어
  - ※ 우리나라 사망재해자 수 : 2,605(2002년) → 2,923(2003년) → 2,825(2004년)
  - ⇒ 사업장에서 사망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처벌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 ◉ 한편, 이 날 처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100인(유해·위험업종의 경우 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 ※ 현행은 1,000인 이상인 경우에만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며, 독일·일본·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 또는 종업원평의회와 별도로 설치하고 있음
- ◉ 또한, 안전·보건관리를 대행해주는 전문기관이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화학물질의 명칭,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시와 관련하여
  -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발암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명칭·성분 및 함유량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있다.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부터 시행(9월말 예정)되며, 노동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처벌이 크게 강화된 것이 특징이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 후인 9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실>